

# 노인복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이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 (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노인복지 ]

『노인복지』 콘텐츠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장기요양급여,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노후대부제도(실버론), 요금 할인 제도, 고령자 일자리 지원, 건강 및 의료비 지원, 주거복지시설과 주택특별공급과 같은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소개하고, 그 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복지	1
1. 노인복지 살펴보기	4
1.1. 노인복지 알아보기	4
1.1.1. 노인복지의 종류	4
2. 일상생활 복지	9
2.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9
2.1.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9
2.1.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4
2.2.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15
2.2.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15
2.2.2.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18
2.3. 교통 등 요금할인 혜택	19
2.3.1. 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19
3. 경제적 복지	23
3.1. 장기요양급여	23
3.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23
3.1.2. 장기요양인정신청	25
3.2. 연금 제도	29
3.2.1. 기초연금	29
3.2.2. 국민연금	32
3.3. 일자리 찾기	34
3.3.1. 노인 일자리 지원	34
3.4. 노인 관련 세금 공제	36
3.4.1.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36
4. 건강 및 의료 복지	39
4.1. 의료복지서비스	39
4.1.1.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39
4.1.2.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41
4.2. 노인 체육활동 참여	42
4.2.1.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43
5. 주거 복지	44
5.1. 주거복지서비스	44
5.1.1.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44
5.1.2. 주택특별공급	46

## 1. 노인복지 살펴보기

### 1.1. 노인복지 알아보기

#### 1.1.1. 노인복지의 종류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 지원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I\)』](#), 37쪽~38쪽 참조).

노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I\)』](#), 37쪽~38쪽과 이 콘텐츠 내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도별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바로가기
	연령 기준	자격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일상생활 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a href="#">바로가기</a>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유사증복사업 수급자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a href="#">바로가기</a>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자격 기준 확인	경로당: 65세 이상	<a href="#">바로가기</a>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활동	60세 이상	20명 이상 단체 신청	<a href="#">바로가기</a>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교통 등 요금할인	자격 기준 확인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a href="#">바로가기</a>

경제적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a href="#">바로가기</a>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a href="#">바로가기</a>
	국민연금	자격 기준 확인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href="#">바로가기</a>
	일자리 지원	자격 기준 확인	공익활동형: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a href="#">바로가기</a>
	종합소득세 공제	자격 기준 확인	기본 공제: 65세 이상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상속세 공제	65세 이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a href="#">바로가기</a>
	양도소득세 비과세	60세 이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65세 이상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 찾기쉬운 생활법령

건강 ·의료 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65세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href="#">바로가기</a>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건강진단 등) : 바로가기 내용 확인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a href="#">바로가기</a>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a href="#">바로가기</a>		
			60세 이상	자격 기준 없음		

주거 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자격 기준 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href="#">바로가기</a>
			<p>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p> <p>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p> <p>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p> <p>※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p>	
	주택특별공급	65세 이상	<p>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p> <p>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p>	<a href="#">바로가기</a>

## 2. 일상생활 복지

### 2.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 2.1.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4쪽 참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6쪽 참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분	세부 구분 및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li> </ul> <p>※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및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으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지고, 기관의 제공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일반돌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li> </ul> <p>※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단,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이 아닌 경우 한시적으로 가사지원서비스 제공].</p>
특화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li> </ul>
사후관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끝난 사람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li> </ul>

### 신청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7쪽 및 29쪽)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 서비스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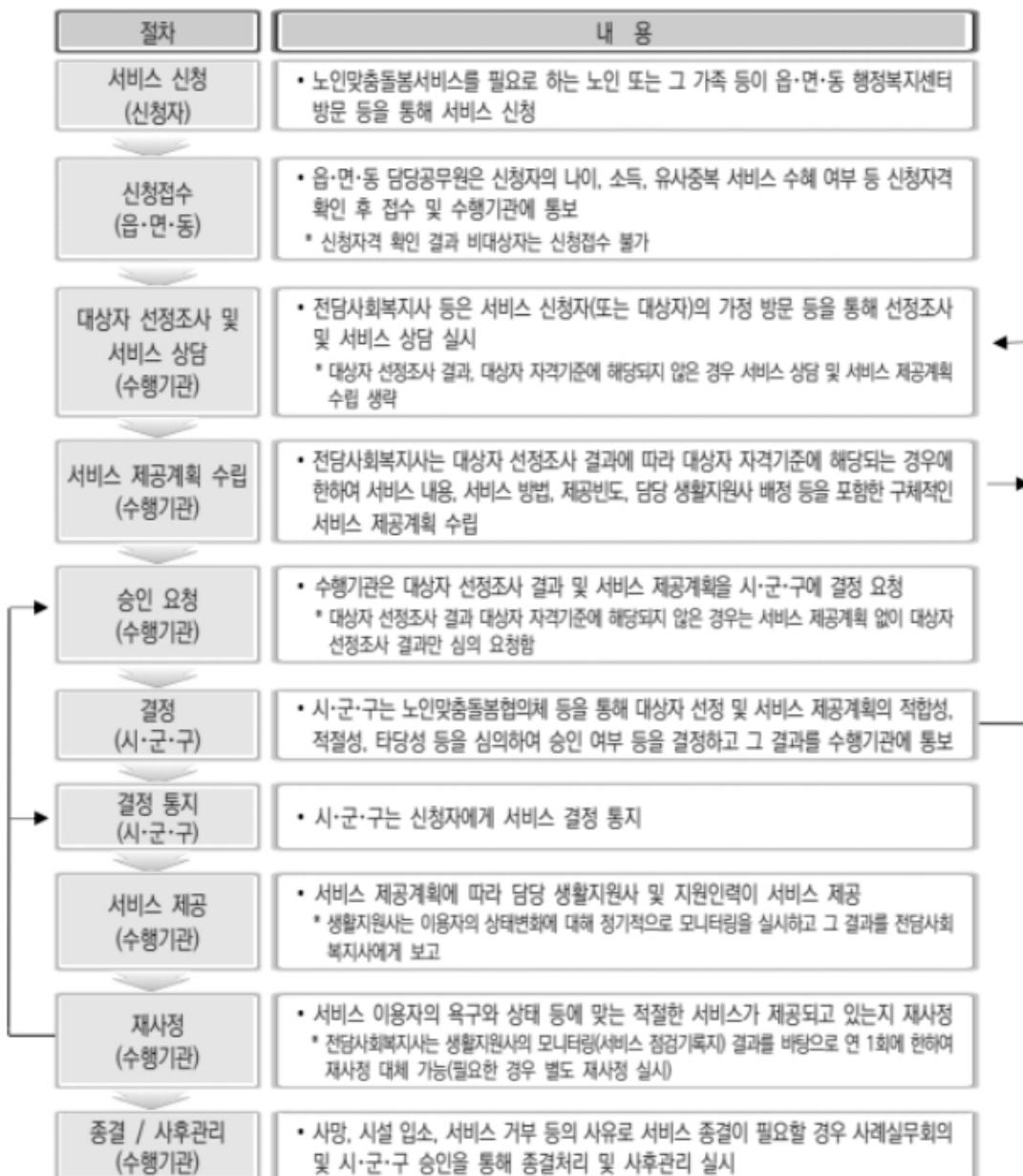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직접 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7쪽 참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분	제공 서비스
직접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가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다음의 서비스 제공</li> <li>▪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서비스</li> <li>▪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자조모임 서비스</li> <li>▪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서비스</li> <li>▪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서비스</li> </ul>
연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 주거, 건강지원, 그 밖의 서비스 등 제공</li> </ul>
특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 우울, 자살생각척도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서비스 제공</li> </ul>
사후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li> </ul>

<이용 절차>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



<출처: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6쪽 참조>

#### 이용 가능 기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심의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0쪽 참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등 이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27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우울형 노인은 추가로 “특화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란?

“특화서비스”란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은둔형, 우울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2쪽 참조).

서비스 대상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2쪽 참조).

※ 단,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승인을 통해 60세 이상의 노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특화서비스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65쪽~170쪽 참조).

서비스 신청: 특화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가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의뢰 포함), 읍·면·동, 유관 기관 등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수 및 서비스 초기상담: 서비스가 접수되면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확정

유형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은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가구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된 노인</li><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li></ul>
우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li></ul> <p>※ 우울형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p> <p>(1순위) 자살시도 후 생존자</p> <p>(2순위) 우울증 진단자</p> <p>(3순위) 척도검사 결과 자살생각척도 7점 이상인 사람</p>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이용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시일로부터 1년간 특화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우울증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78쪽참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제27조제1항제2호 참조).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 비용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대상자와 이용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제38조제2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7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분	이용 비용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의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1.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용자 본인 전액 부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참조).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95쪽 및 101쪽 참조).

주·야간 보호서비스: 보호기간은 1일(08:00~22:00)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 노인과 그 가정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보호하되,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단,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2.2.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 2.2.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노후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분	내용
경로당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 이용 방법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60세이상의 노인[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경로당: 65세 이상의노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 70쪽~133쪽 참조) .

구분	제공 프로그램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제공</li>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교육대상으로 선정된 독거노인 대상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주 1회, 2시간)</li> <li>▪ 농어촌 노인공동생활 공간 활용</li> <li>▪ 학대피해노인 지킴이센터 활용 및 노인학대 관련 교육 등 제공</li> </ul>
노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서비스: 복지정보 제공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보 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 연금, 건강, 세무 등) 서비스 제공 및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제공</li> <li>▪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상담 등 가족기능 지원 프로그램 제공</li> <li>▪ 건강생활 지원: 건강교실, 독거노인 지원, 물리치료, 양·한방 진료 등 지원 및 급식지원(중식 지원, 밀반찬 배달 등) 서비스 제공</li> <li>▪ 노년 평생교육 지원 및 취미여가지원: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예능활동, 동아리 활동 등 지원</li> <li>▪ 지역자원 및 조직화: 지역자원개발 및 지역복지연계 프로그램 운영, 도배 또는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li> <li>▪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노인일자리,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및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등 권리증진프로그램 참여 지원</li> <li>▪ 돌봄 및 요양서비스(선택사업):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 보호프로그램 등 제공</li> </ul>
노인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미·여가, 건강, 교양, 사회참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주 1회 이상 교육 실시)</li> </ul> <p>※ 노인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재파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a href="https://www.mohw.go.kr/">https://www.mohw.go.kr/</a>)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노인교실'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자체별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2.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노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참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제2항).

#### 노인 자원봉사활동 유형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국가 유산의 보호 및 안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자원봉사단 활동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people.or.kr/>)-주요사업 소개-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참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유형		활동내용 예시
지역사회 공헌활동	주거 및 환경보호	마을공동체, 주거개선, 농어촌 봉사, 기능·기술
	생활 편의지원	급식지원, 식사·반찬지원, 이동지원, 청결지원, 활동보조
	안전지도	교통안전, 어린이·청소년·취약계층 안전계도, 지역방범 등
재능나눔 활동	상담 및 안내	말벗·상담, 전문상담, 진로상담, 노인학대 예방, 우울·자살예방, 치매예방
	교육지도	교육, 스마트폰 및 IT 정보화 교육 등
	문화예술	민요, 국악, 악기, 스포츠댄스, 사진활동 등
	보건의료	간호·간병, 발마사지, 약손봉사, 수지침, 지압 등
특성화 활동	위탁기관별 특성화 활동(55세부터 참여할 수 있음)	
그 밖의 활동	위 활동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 신청방법 및 활동절차

노인자원봉사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한노인회 홈페이지](https://www.koreapeople.or.kr/)] -주요사업 소개-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참조].

1. 자원봉사 참여 신청: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시·군·구 지회 문의 및 봉사활동 신청(기준 봉사단 참여 신청 또는 20명 단위의 새로운 봉사단 조직 및 지원)
2. 자원봉사자(단장 포함) 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정(또는 새로 조직한 자원봉사단이 선정된 후) 자원봉사자 교육 이수
3. 자원봉사단 활동 시작: 월별 실행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활동일지(서명날인) 작성
4. 활동 보고: 월별 활동내역 보고(활동일지 등), 월별 활동운영비 사용내역 보고

※ 노인자원봉사단 참여 신청 문의를 위한 본부 및 지역센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홈페이지](https://www.koreapeop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 교통 등 요금할인 혜택

### 2.3.1. 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공원, 박물관, 대중교통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또는 무료 이용 시설

65세 이상의 노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시설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비고
철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호는 토요일, 공휴일 혜택 제외</li> <li>▪ 운임에 한함</li> </ul>
	통근열차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임에 한함</li> </ul>
	수도권 전철	무료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임에 한함</li> </ul>
고궁		무료	
능원		무료	
국공립 박물관		무료	
국공립 공원		무료	
국공립 미술관		무료	
국공립 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함</li> </ul>

기초연금 등을 받는 노인은 이동통신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 및 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서비스, LTE, 5G 등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제3항·제4항·제6항 참조].

구분	요금 감면 내용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li> </ul>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li> </ul> <p>※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p>						
차상위계층	<table border="1"> <tr> <td>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td> </tr> <tr> <td>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td> </tr> <tr> <td>장애인수당 수급자</td> </tr> <tr> <td>장애인연금 수급자</td> </tr> <tr> <td>사회보장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td> </tr> </table> <p>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p>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보장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구당 4인을 한도(6세 이하의 아동 제외)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li> <li>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li> </ul> <p>※ 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p>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사회보장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li> </ul> <p>※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p>						

※ 그 밖에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찾기쉬운 생활법령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5. 23.),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참조].

### 신청 대상

다음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5. 23.),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참고 1 자료 참조].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 ※ 에너지바우처 자격, 지원단가, 신청·사용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v.or.kr](http://www.energyv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급여 등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경제적 복지

### 3.1. 장기요양급여

#### 3.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거동이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체활동 등 요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284쪽 참조).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및 별표 1).

※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① 재가급여와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참조).

급여 종류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li> </ul>
	방문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li> </ul>
	방문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li> </ul>
	주·야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li> </ul>
	단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월 15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li> </ul>
	그 밖의 재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 포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u>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u>」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li> </ul>
시설급여	시설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li> </ul>	
	<p>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u>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u>」 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ul>	
특별현금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부 지급</li> </ul>	
	요양병원 간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지급</li> </ul>

※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일상생활 복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 제외)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급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 참조).

급여 종류	부담 비율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부담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수급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감경
국민건강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감경

※ 장기요양기관의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 정보 등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1.2.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등급에 따라 받을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및 제15조 참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의사소견서발급 방법

#### 1. 제출기한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단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본문).

※ 단,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2. 제출 제외 사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섭·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3. 발급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함

신청인이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참조)

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100분의 20 본인 부담, 100분의 80 공단부담

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 부담

다. 나.를 제외한 다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지방자치단체 각각 부담

라. 소득·재산등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과 천재지변

## 찾기쉬운 생활법령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공단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단, 신청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이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4항 참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신청할 수 있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제2항 참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 접수 후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본문).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가 완료된 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장기요양인정 결과를 통지받고 등급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제2항 참조).

또한, 심사청구 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참조).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종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갱신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및 제21조).

###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년이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만약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수급 제한 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 연금 제도

#### 3.2.1. 기초연금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해 활용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기초연금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월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금액(2025년 기준)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이를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참조).

단,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그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참조).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찾기쉬운 생활법령

- ✓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를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기초연금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

#### ※ 기준연금액

2025년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며,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이하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라 함)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제1항).

1. 국민연금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제5항 참조).

- ✓ 국민연금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부가연금액

※ {} 안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 소득재분배급여금액·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제2호).

“부가연금액”이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제3호).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6항 참조).

-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1/2 \* 연계퇴직연금액) \* 2/3]} + 부가연금액

※ {} 안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 연계퇴직연금액

“연계퇴직연금액”이란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말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3. 기초연금 수급권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7항, 제6조, 제7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참조).

가.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다.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라 함)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위 1.과 2.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사유

다음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소득인정액과 위 1.부터 3.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기초연금 지급 정지·상실·환수 사유

## 찾기쉬운 생활법령

### 1. 정지 사유(「기초연금법」 제16조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국외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기초연금수급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2. 상실 사유(「기초연금법」 제17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3. 환수 사유(「기초연금법」 제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이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붙여 환수)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단,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환수금과 상계할 수 있고,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제2항·제3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참조).

※ 미지급 연금신청 등 기초연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2.2.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란?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9조제1항 참조).

노후준비서비스 종류



<출처: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sa.nps.or.kr/main.do>)>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sa.nps.or.kr/main.do>) - 노후준비서비스소개-서비스 이용 참조].

구분	제공 서비스
진단서비스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37개 문항)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상태 종합적으로 진단
상담서비스	노후준비에 대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맞춤형 상담 제공
교육서비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맞춤형 강의 제공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상담시 계획한 실천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과 정보 제공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노인은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이란?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이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는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찾기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노후긴급자금대부' 검색 후 참조] .

### ※ 신청제외 대상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또는 충당 중인 사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사람

장애인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서류 및 대부금액 등 관련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노후긴급자금대부'>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3. 일자리 찾기

#### 3.3.1.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경제력 있는 노후생활을 즐겨보세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참조).

일자리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쪽~9쪽 참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분	유형	주요 내용	참여 자격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가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등)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시범사업)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공동체 사업단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하는 노인이 둘 이상인 사업단 (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60세 이상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노인 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친화기업·기관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지원(노인 개인이 아닌 기업지원 형태)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Q.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저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 등급) 판정자(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밖에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사업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로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 가능)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람(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사람

<출처: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9쪽>

※ 신청 방법 등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이 사이트 『고령자 일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4.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3.4.1.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다목 참조).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Q. 저는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동생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저는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생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자분과 함께 살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종합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taxlaw.nts.go.kr/index.do>)-자주묻는 국세상담-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10. 부모(조부모) -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인지?' Q&A 내용 참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종합소득금액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또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taxlaw.nts.go.kr/index.do>)-자주묻는 국세상담 참조].

거주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Q. 어머님이 7월에 사망하신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7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3조제4항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taxlaw.nts.go.kr/index.do>)-자주묻는 국세상담-세법상담정보-연말정산-15. 경로우대자 공제-‘연도 중 사망’ Q&A 내용 참조].

65세 이상의 노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인적공제 혜택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65세 이상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참조).

위에서 말하는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준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4항 참조).

※ 위의 비과세 혜택은 주택(주택 및 이에 달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달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참조).

구분	배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위에서 말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다음의 사람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참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제3호나목2) 또는 제3호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노인은 이자소득과 배당금액의 비과세 혜택을 쟁겨보세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일 것

- ✓ 군인공제회
- ✓ 한국교직원공제회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경찰공제회
- ✓ 대한소방공제회
- ✓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 ※ 저축원금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을 저축원금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위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 4. 건강 및 의료 복지

### 4.1. 의료복지서비스

#### 4.1.1.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해보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의 ① 노인요양시설과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성 질환 등에 의한 치료·요양이 아닌 학대로 인하여 치료·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학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2 참조).

입소 대상	입소 비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입소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

각 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소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참조).

구분	입소 절차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p>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p> <p>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p> <p>※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p>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p>1. 입소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p> <p>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p>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입소비용을 전부 수납하고 시설에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p>당사자 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에 따름</p> <p>※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을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p>

Q. 최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가정간호의 장소는 환자의 자택뿐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따라서 노인들이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자택으로 볼 수 있고, 이곳에 입소한 노인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참조>

### 4.1.2.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 수술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의료비 지원 종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4제1항).

이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치매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 참조] .

구분	대상자	지원 범위
건강검진 (건강진단 등)	지원 범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li><li>▪ 65세 이상: 지자체 일반건강진단 실시</li><li>▪ 66세 이상: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li></ul> <p>※ 자세한 진단항목 등은 &lt;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a href="https://www.nhis.or.kr/nhis/index.do">https://www.nhis.or.kr/nhis/index.do</a>)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gt;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안(眼) 질환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술비: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li><li>▪ 치료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li></ul>

무릎관절증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li> <li>치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li> </ul>
임플란트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평생 2개까지 법정본인부담률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li> </ul> <p>※ 법정본인부담률 등은 &lt;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a href="https://www.nhis.or.kr/nhis/index.do">https://www.nhis.or.kr/nhis/index.do</a>)-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gt;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치아건강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법정본인부담률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li> <li>무상보상기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없이 진찰료만 산정</li> </ul> <p>※ 법정본인부담률 등은 &lt;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a href="https://www.nhis.or.kr/nhis/index.do">https://www.nhis.or.kr/nhis/index.do</a>)-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gt;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치매검진		6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별검사: 60세 이상 노인</li> <li>진단·감별검사(선별검사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및 보건소장이 인정한 사람</li> </ul> <p>※ 치매노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a href="#">치매 노인</a>』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의료비 지원 한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2. 노인 체육활동 참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

### 4.2.1.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노년기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노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제2항 및 대한체육회체육포털 (<https://portal.sports.or.kr/m/main.do>) -체육지원-어르신체육 참조] .

주요 프로그램

어르신 체육활동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체육회체육포털 (<https://portal.sports.or.kr/m/main.do>) -체육지원-어르신체육 참조] .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어르신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게이트볼, 탁구, 볼링, 당구, 검도 등 19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종목별 페스티벌 및 대회	60세 이상 교실 참여 어르신을 중심으로 페스티벌 및 대회 개최
생활체육 종목 비대면 콘텐츠 제공	11~13개 채널 지역방송을 통해 어르신생활체육 종목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및 보급
시·도(시·군·구)별 어르신 생활체조 및 체력관리 교실	소속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체육활동은 지역별 체육회 또는 19개 종목단체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관련한 문의는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부 (☎ 02-2144-8222) 또는 대한체육회체육포털 (<https://portal.sports.or.kr/m/main.do>) 내 문의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주거 복지

### 5.1. 주거복지서비스

#### 5.1.1.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주거 공간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의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구분	내용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소 대상 및 입소 비용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대상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기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서 65세이상의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부 부담  
라.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가능(「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가.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 나.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입소 절차

각 시설에 입소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소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참조).

구분		입소 절차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p>1. 입소신청서 제출</p> <p>※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p> <p>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p>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p>1.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p> <p>2.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받고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p> <p>※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p>
	실비보호대상자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름
노인복지주택		<p>당사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름</p> <p>※ 입소정원이 초과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제6항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p> <p>※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을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p>

### 5.1.2. 주택특별공급

노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참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선정 기준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일 것

※ 제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를 것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퍼센트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46조제3항 참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함)하며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라목1) 및 별표 6호의2마목1)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30%] 이하일 것

위의 입주요건을 갖춘 특별공급대상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6 제2호라목2) 및 별표 제6호의2마목2) 참조].

특별공급 주택 수의 90%(소수점 이하 올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 찾기쉬운 생활법령

경우 140%) ] 이하인 사람

위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 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 그 밖에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